

# 서대문자연사박물관 · 익산보석박물관

## 상호 업무 협약서

서대문자연사박물관과 익산보석박물관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자연사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·기술의 창출 및 연구·개발, 기술자문, 교류전시, 학술교류 사업 등 제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 발전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사항)**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학예, 전시, 홍보, 학술교류 등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확립
2. 과학교류를 위한 각종 시설의 상호 활용 및 지원
3. 체험 등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, 운영
4. 학술회의, 강연회, 과학 관련행사 등의 공동주최
5. 기타 본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의 공동추진 및 지원

**제3조(협약이행)** 본 협약은 상호 신의·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며,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대방의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적극 협조한다.

**제4조(협약변경)** 협약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'양 기관'이 합의한 후 변경·해지할 수 있다.

**제5조(협약효력)** 본 협약은 '양 기관'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 년 1 월 13 일



서대문자연사박물관

관 장 이 정 모

서명



익산보석박물관

관 장 정 원 섭

서명

# 익산보석박물관 · 서대문자연사박물관

## 상호 업무 협약서

익산보석박물관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자연사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·기술의 창출 및 연구·개발, 기술자문, 교류전시, 학술교류 사업 등 제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 발전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사항)**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학예, 전시, 홍보, 학술교류 등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확립
2. 과학교류를 위한 각종 시설의 상호 활용 및 지원
3. 체험 등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, 운영
4. 학술회의, 강연회, 과학 관련행사 등의 공동주최
5. 기타 본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의 공동추진 및 지원

**제3조(협약이행)** 본 협약은 상호 신의·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며,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대방의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적극 협조한다.

**제4조(협약변경)** 협약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'양 기관'이 합의한 후 변경·해지할 수 있다.

**제5조(협약효력)** 본 협약은 '양 기관'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 년 1 월 13 일



익산보석박물관

관 장 정 원 섭

서명



서대문자연사박물관

관 장 이 정 모

서명